

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.



교육부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의 집합·모임·행사 집합금지 조치

1. 관련

- 가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(2020.8.22.)
- 나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사고수습본부(2020.8.22.)

2. 지난 8월 19일부터 수도권(서울·경기·인천) 지역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는 조치를 실시하였으나, 최근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전국에서 나타나고 있어,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월 23일 0시부터 전국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

3. 이에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해서도 “실내 50인 이상, 실외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·공적 집합·모임·행사”를 아래와 같이 금지하니, 관할 지자체에서는 해당 시설 및 지역주민 등에 이를 안내하여 집합금지 조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만,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거나,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범위와 내용, 적용 시점 등을 조정할수 있습니다.

※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본부(행안부)는 중앙합동점검단 등을 통해 이행 상황 점검에 협조

- 아 래 -

- 적용 기간 : 2020년 8.23.(0시부터) ~ 별도 해제 시
 - ※ 행정조치 적용 시점은 지자체의 현장상황 및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
- 조치 내용 : 실내 50인 이상, 실외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·공적 집합·모임·행사 금지
 - 집합·모임·행사 :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·약속·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·모임·행사로써 아래 표와 같은 경우를 포함

< 실내 50인 이상 /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대상 사례 >

▲ (행사) 전시회, 박람회, 설명회, 공청회, 학술대회, 기념식, 수련회, 집회, 페스티벌·축제, 대규모 콘서트, 싸인회, 강연 등

▲ (사적 모임) 결혼식, 동창회, 동호회, 야유회, 회갑연, 장례식, 동호회, 돌잔치, 워크샵, 계모임 등

▲ (각종 시험) 채용시험, 자격증 시험 등(한 교실 내 50인 이내인 경우 허용)

- 정부·공공기관의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법적의무 여부, 긴급성*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자체와의 협의 하에 예외 허용, 다만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

* ①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② 의무적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③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, ④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·연기가 불가한 경우

○ 법적 근거 :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

-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, 집회,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

붙임. 전국 2단계 격상에 따른 집합·모임·행사 집합금지 조치. 끝.

교육부장관

수신자 각실과, 고등교육기관전체, 소속기관, 소속단체, 시도교육청



주무관 권동주 학생건강정책 2020.8.22
과장 조명연

협조자

시행 학생건강정책과-7117 (2020. 8. 22.) 접수

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/ www.moe.go.kr

전화번호 044-203-6548 팩스번호 044-203-6438 / two51991@moe.go.kr / 대국민 공개